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월)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호)  
나. 회부일자: 2026. 8.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8. 26.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곽정숙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이 2026.12.31.종료됨에 따라,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위탁운영체                            | 시설현황 |                           |                                                                    |          |                         |
|----------------|----------------------------------|------|---------------------------|--------------------------------------------------------------------|----------|-------------------------|
|                |                                  | 센터장  | 소재지                       | 시설규모                                                               | 개소일      | 위탁기간                    |
| 정릉1동<br>커뮤니티센터 | 아름다운정릉1동<br>사람들협동조합<br>(조합장:이진평) | 박경선  | 성북구<br>정릉로38가길6<br>(정릉1동) | 대지면적:271㎡<br>규모: 지상2,3층<br>(연면적:233.53㎡)<br>* 지상1층 경로당은<br>위탁에서 제외 | 2014.1.1 | ‘23.1.1.~<br>’26.12.31.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12.31.(3년)

3) 위탁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의결

4) 위탁사무의 범위: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제7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2025.3.13.)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3.28.]

#### **제10조(계약체결 등)**

-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개정 2020.12.31.)
  6.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개정 2016.12.29, 2020.12.31.)
  7. 예산지원 내용 (개정 2020.12.31.)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에서 이동, 2013.3.28]

2)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참고: 2026년 민간위탁금 79,537천원)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2026. 12. 31. 자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3년간(2027. 1. 1.~ 2029. 12. 31.)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현황>

| 시설명            | 위탁운영체                            | 시 설 현 황 |                           |                                                                    |           |                         |
|----------------|----------------------------------|---------|---------------------------|--------------------------------------------------------------------|-----------|-------------------------|
|                |                                  | 센터장     | 소재지                       | 시설규모                                                               | 개소일       | 위탁기간                    |
| 정릉1동<br>커뮤니티센터 | 아름다운정릉1동<br>사람들협동조합<br>(조합장:이건평) | 박경선     | 성북구<br>정릉로38가길6<br>(정릉1동) | 대지면적:271㎡<br>규모: 지상2,3층<br>(연면적:233.53㎡)<br>* 지상1층 경로당은<br>위탁에서 제외 | 2014.1.1. | ‘23.1.1.~<br>’26.12.31. |

#### <시설현황>

| 구 분  | 연면적     | 명 칭           | 운영내용                                 |
|------|---------|---------------|--------------------------------------|
| 계    | 359.25㎡ |               |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주민커뮤니티 센터」              |
| 지상1층 | 125.72㎡ | 어르신 사랑방       | · 정릉1동경로당 - 어르신 여가생활공간 (제외)          |
| 지상2층 | 135.08㎡ | 주민복합문화공간      | · 건강 측정, 인터넷, 여가문화교실, 대관, 카페테리아 운영 등 |
| 지상3층 | 98.45㎡  | 강당 및 소규모프로그램실 | 주민 여가프로그램실, 소규모프로그램실 운영              |

##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민간 위탁 사무 내용 중 제1호와 제6호<sup>1)</sup>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와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을 도모하고 세대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써,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과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sup>2)</sup>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사 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2025.3.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월)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호)  
나. 회부일자: 2026. 8.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8. 26.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광정숙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민간(관리동) 어린이집 4개소의 국공립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7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승인 및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신규위탁 대상 시설

| 연번 | 시설명(가칭)                   | 소재지<br>(행정동)       | 정원(예정) | 면적      | 비고                   |
|----|---------------------------|--------------------|--------|---------|----------------------|
| 1  |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br>1단지 어린이집 | 삼선동2가 296<br>(삼선동) | 56명    | 421.55㎡ | ※ 개원예정일 :<br>2027.5. |
| 2  |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br>3단지 어린이집 | 삼선동2가 296<br>(삼선동) | 27명    | 222.48㎡ |                      |

| 연번 | 시설명(가칭)                  | 소재지<br>(행정동)        | 정원(예정) | 면적      | 비고 |
|----|--------------------------|---------------------|--------|---------|----|
| 3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br>1단지 어린이집 | 장위동 25-55<br>(장위3동) | 81명    | 582.25㎡ |    |
| 4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br>2단지 어린이집 | 장위동 25-55<br>(장위3동) | 37명    | 335.89㎡ |    |

가)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예정)

나)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 선정

## 2) 재위탁 대상 시설

| 연번 | 시설명<br>(원장)        | 소재지<br>(행정동)                       | 현 위탁체<br>(대표자) | 정원/현원   | 면적   | 현 위탁기간                      |
|----|--------------------|------------------------------------|----------------|---------|------|-----------------------------|
| 1  | 키즈맘어린이집<br>(서경혜)   | 북악산로 844<br>(돈암2동)                 | 개인<br>(서경혜)    | 20명/20명 | 86㎡  | 2022.03.01.~<br>2027.02.28. |
| 2  | 바다어린이집<br>(김인석)    | 북악산로 828,<br>101동 106호<br>(정릉1동)   | 개인<br>(김인석)    | 20명/19명 | 155㎡ | 2022.03.01.~<br>2027.02.28. |
| 3  | 꿈꾸는어린이집<br>(박진희)   | 북악산로 813<br>105동 108호<br>(정릉1동)    | 개인<br>(박진희)    | 20명/20명 | 85㎡  | 2022.03.01.~<br>2027.02.28. |
| 4  | 꿈초롱어린이집<br>(소은덕)   | 서경로 31,<br>104동 103호<br>(정릉2동)     | 개인<br>(소은덕)    | 20명/16명 | 89㎡  | 2022.03.01.~<br>2027.02.28. |
| 5  | 라파엘엔젤어린이집<br>(나이정) | 솔샘로24길 15,<br>105동 102호<br>(정릉4동)  | 개인<br>(나이정)    | 20명/10명 | 87㎡  | 2022.03.01.~<br>2027.02.28. |
| 6  | 이음어린이집<br>(이정미)    | 송인로8길 80, 111동<br>(길음2동)           | 개인<br>(이정미)    | 50명/45명 | 384㎡ | 2022.03.01.~<br>2027.02.28. |
| 7  | 한울어린이집<br>(송윤숙)    | 송인로8길 80<br>(길음2동)                 | 개인<br>(송윤숙)    | 50명/44명 | 384㎡ | 2022.03.01.~<br>2027.02.28. |
| 8  | 혜연어린이집<br>(이은자)    | 종암로24가길 53,<br>104동 107호<br>(종암동)  | 개인<br>(이은자)    | 20명/20명 | 99㎡  | 2022.03.01.~<br>2027.02.28. |
| 9  | 선경어린이집<br>(조영아)    | 종암로24가길 53,<br>101동 101호<br>(종암동)  | 개인<br>(조영아)    | 20명/20명 | 113㎡ | 2022.03.01.~<br>2027.02.28. |
| 10 | 자연샘어린이집<br>(이미경)   | 한천로101길 18,<br>206동 102호<br>(장위3동) | 개인<br>(이미경)    | 20명/19명 | 86㎡  | 2022.03.01.~<br>2027.02.28. |
| 11 | 하늘채어린이집<br>(김미영)   | 한천로 509,<br>104동 101호<br>(석관동)     | 개인<br>(김미영)    | 20명/20명 | 86㎡  | 2022.03.01.~<br>2027.02.28. |
| 12 | 리슈빌어린이집<br>(석영민)   | 보문로26길 17<br>(보문동)                 | 개인<br>(석영민)    | 41명/24명 | 273㎡ | 2022.06.01.~<br>2027.05.31. |

가)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 이내(예정)

나) 수탁기관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 선정

### 3) 위탁 사업의 범위

-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신규 및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신규위탁 시설은 4개소(p2 참고)로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 예정
- 재위탁 시설은 12개소(p2~3 참고)로 위탁 기간( 2027. 2. 28.~5. 31.)이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5년 이내 재위탁 여부 및 선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3)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항4)에서 “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5) 및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제1항6)에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

- 
- 3)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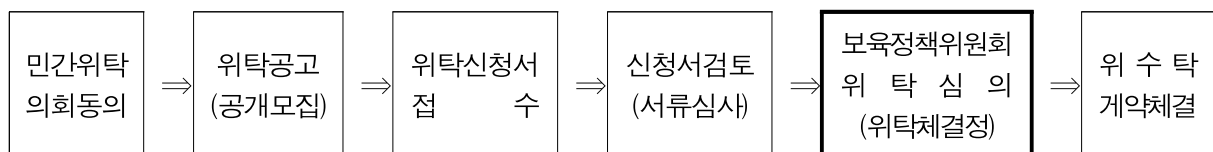
## ※ 참고사항

### 1) 위탁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19p〉

### 2) 위탁 선정절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참고〉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